

# 우리나라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른 취급절차

## 1.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

### □ 아포스티유 협약

- 우리나라는 ‘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(Apostile 협약)’에 가입함에 따라 동 협약에 2007년 7월 14일 발효 될 예정
- 외국 대사관의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편한 아포스티유(Apostille) 증명서로 대체하여, 협약 가입국간 대사관의 영사확인 절차 없이 공문서 상호 인정을 위한 협약임.
  - 국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1961년 체결, 1965년 발효 (폴란드는 2005년 8월)
  - 2007년 5월 현재 가입국은 미국, 일본, 영국, 프랑스, 독일, 호주, 뉴질랜드 등 92개국
- 아포스티유 협약 적용예:
  - 주한 미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기 위해 미국대사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,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미국에서 바로 사용가능
  - 과거 주 폴란드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주재국 관련 기관에 제출해온 각종 서류들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폴란드에서 바로 사용가능

### □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른 효과

- 해외진출시 영사확인 수속에 따르는 시간 및 비용 절약
- 법적 안정성의 증대

## 2.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후의 영사확인 절차 변경

### □ 한국내 공문서 발급시

현재(가입전)	한국내 공문서 발급 → 한국정부 확인(영사확인) → 주한국 폴란드대사관 확인(영사확인) → 폴란드내에서 공문서로 인정 (4단계)
'07.7.14 이후	한국내 공문서 발급 → 한국정부 확인(아포스티유) → 폴란드에서 공문서로 인정 (3단계)

### □ 폴란드내 공문서 발급시

현재(가입전)	폴란드내 공문서 발급 → 폴란드정부 확인(영사확인) → 주폴란드 한국대사관 확인(영사확인) → 한국내에서 공문서로 인정 (4단계)
'07.7.14 이후	폴란드내 공문서 발급 → 폴란드정부 확인(아포스티유) → 한국에서 공문서로 인정 (3단계)

## 3. 아포스티유 협약 적용대상 문서

### □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1항에 규정된 적용대상 문서

정부기관 발행 공문서 (단, 세관 사무관련 문서 제외)	(이혼)판결문, 호적등본, 무범죄사실증명서, 출생·혼인·사망 증명서, 각종 자격증, 납세사실증명서, 국공립학교 발행 증명서, 국공립병원 발행진단서, 특허증서, 의약품 허가확인서 등
공증 문서	사립학교 발행 증명서, 재직증명서, 사립병원 발행진단서, 회사발행 문서, 은행발행 문서 등 (단,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, 공사, 사립학교의 문서는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)

※ 2007.7.14 이후 상기 서류에 대한 대사관 영사확인 제도는 폐지되고 폴란드 아포스티유 발급기관(외교부)에서 확인(아포스티유를 첨부)필요

○ 상기 아포스티유 대상문서가 폴란드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어 또는 폴란드어로 번역되어야 함.

• 한국내에서 영어로 번역시에는 동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도 확인이 필요

하나, 폴란드내에서 폴란드 정부가 인정한 공증 번역사에 의해 영어 또는 한글로 번역시에는 별도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하지 않음.

□ 아포스티유 비적용 문서: 상기 서류 이외의 문서

인감위임장, 위임장, 국내 호적신고용 출생·결혼·사망 증명서, 초청장, 보증서,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(주택임대차, 아파트 매매), 어음·수표에 관한 공정증서, 유언에 관한 공정증서, 정관인증(주식회사, 유한회사, 보험업 법상의 원시정관), 법인의사록 인증 등

※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요함.

#### 4. 한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발급절차

□ 발급기관: 외교통상부, 법무부, 법원행정처

- 단, 법무부, 법원행정처는 발급준비 중으로 현재 외교통상부 재외 동포영사국 영사민원실에서만 발급 중임(해외대사관에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하지 않음).

□ 외교통상부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 정보

- 신청서류
  - 방문 신청시: ①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, ②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, ③ 번역문(단, 공증된 문서가 영어 또는 해당국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문 불요), ④ 대리인에 의한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  - 우편 신청시: ① 상기 신청서류 일체, ② 반송용 우표 및 봉투, ③ 수수료를 <(110-733)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, 외교통상부 별관 I, 코리안 리 재보험빌딩 4층,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앞>으로 송부
  - 수수료: 건당 500원, 처리기한: 3일내
- ※ 단, 번역공증의 제출은 민원인의 선택사항임.

○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영사민원실 정보

- 주소: (110-733)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 재보험빌딩 4층 영

사민원실(외교통상부 별관, 여권과)

- 전화: 730-0116, 738-5999
- 근무시간: 월~금 09:00-18:00 (공휴일 제외)
- 웹사이트 주소: www.0404.go.kr

## 5. 폴란드 정부의 아포스티유 발급절차

발급기관: 폴란드 외교부 영사과 법률계

- 현지명칭: Ministerstwo Spraw Zagranicznych Departament Konsularny i Polonii Wydział Prawny Legalizacja Dokumentów

폴란드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 정보

- 폴란드 외교부 영사과 법률계 정보
  - 주소: Al. Szucha 21, 00-580, Warsaw
  - 전화번호: (22) 523-9463, 523-9422, 523-9128.
  - 담당자: Mr. Zygmunt Matynia (Tel: (22)-523-9441, 523-8029, 영어 통화가능)
  - e-메일: dkip@msz.gov.pl 또는 z.matynia@msz.gov.pl
  - 근무시간: 09:00-13:00 (공휴일 제외)
  - 발급비용: 60 즈워티(건당)
  - 처리기간: 즉시. 단 공증문서가 많을 경우 사전 전화예약을 요함.
- 우편 신청
  - 신청서류: ① 공증이 필요한 서류, ② 발급비용 은행납부 영수증, ③ 반송봉투(주소 및 우표 첨부).
  - 처리기간: 2주(단,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)
  - 납부 은행계좌: Urząd M. St. Warszawy, Dzielnica, Śródmieście, ul. Nowogrodzka 43 Bank PEKAO S.A. V/O w Warszawie 45 1240 1066 1111 0010 0317 1881(해외송금일 경우, IBAN코드(PL) 또는 SWIFT코드(PKOPPLPW) 기재 필요)
  - ※ 영어번역본을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으나(한글 번역본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은 불가하다 함), 영어번역본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요구시 추가비용(건당 60 즈워티) 소요

(자료제공: 폴란드주재원)

문의: 전문연구원 석진오 (☎3779-6665)

Email: greenbard@koreaexim.go.kr